

# 안양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

의안 번호	946
----------	-----

제출일자 : 2001. 2. .

제출자 : 안 산 시 장

## 1. 제안이유

안양권행정협의회가 '81년 구성 이후 본 협의회 개최 없이 실무협의회만 개최 되는 등 운영이 저조하여 규약내용 중 협의회 명칭, 회장의 선출제 실시,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등의 규약변경을 통하여 실질적인 협의회가 되도록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 2. 주요골자

- 가. 협의회 명칭을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로 변경함(안 제1조)
- 나. 협의회 사무소는 안양시에 두며, 안양시에서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토록 함(안 제2조)
- 다. 협의회에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두도록 하며, 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토록 함(안 제4조)
- 라.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매분기초 두 번째 수요일에 개최하도록 함(안 제7조)

# 안양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

안양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경기 중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경기도 중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위치 등)** ①협의회의 사무소는 안양시에 둔다.

②사무소의 소재지인 안양시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경기도 중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안양시장, 광명시장, 안산시장, 과천시장, 시흥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 (조직)** ①협의회에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둔다.

②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무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⑤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 (기능)** ①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 1.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 4.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의 사무의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 5. 자원의 개발, 이용, 조사에 관한 사항
- 6.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7. 인접지역간 연결 버스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 8. 주요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
- 9.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11. 기타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계획확정 이전에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방법)** ①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회의를 소집한다.

②협의 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두 번째 수요일에 시별 윤번제로 순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결사항 등 각종 회의관련 자료 원본을 안양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⑥안양시는 위원이 자료열람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처리)** ①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회장시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장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미합의사항의 조정 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조정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문위원)** ①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는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실무협의회)** ①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전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 안전에 따라 담당과장이 배석·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은 회장시의 업무담당 실·국·과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제8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④회의는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⑤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비부담) ①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필요시마다 각 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회계) 협의회는 경리상황은 간사가 관장하고 회장에게 보고하며,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 (보칙) 이 규약 외의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기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변경안
<p>제1조 (목적) 안양시를 중심으로 한 안양권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양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p>	<p>제1조 (목적) 이 규약은 경기도중부권에 위치한 _____ _____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안양시에 둔다.  (신설)</p>	<p>제2조 (사무소의 위치 등) ①(현행과 같음) ②사무소 소재지인 안양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한다.</p>
<p>제3조 (구성) 협의회는 안양권행정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로 구성한다.  (신설)</p>	<p>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경기도 중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안양시장, 광명시장, 안산시장, 과천시장, 시흥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으로 구성한다.</p>
<p>제4조 (조직) ①본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안양시장으로 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안양시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시장이 대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④(생략)</p>	<p>제4조 (조직) ①협의회에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둔다. ②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무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 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시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⑤(현행과 같음)</p>

현행	변경안
<p>제5조 (기능) ①(생략) 1 ~ 10 (생략) 11. 제1호 내지 제10호 이외에 협의회 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각 호의 사항 중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필요로하는 사항은 계획 확정 이전에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5조 (기능) ①(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기타 협의회 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_____ _____ _____ _____</p>
<p>제6조 (협의방법) ①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생략)</p>	<p>제6조 (협의방법) ① _____ _____ _____ 회의를 소집한다. ②(현행과 같음)</p>
<p>제7조 (회 의) ①(생략) ②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되 2~3월과 8~9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7조 (회 의) ①(현행과 같음) ② _____ 분기별로 개최하되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두 번째 수요일에 시별 윤번제로 순회 개최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 _____ _____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결사항 등 각종 회의관련 자료 원본을 안양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⑥안양시는 위원이 자료열람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p>

현행	변경안
<p>제8조 (사무처리) ①(생략)</p> <p>②간사는 <u>안양시 기획담당관</u>으로 하고 서기는 <u>안양시 기획계장</u>으로 한다.</p>	<p>제8조 (사무처리) ①(현행과 같음)</p> <p>② <del>_____</del> <u>회장시 업무담당과장</u> <del>_____</del>  <del>_____</del> <u>회장시 업무담당주사로</u> <del>_____</del></p>
<p>제9조 (회의록 작성) (생략)</p>	<p>제9조 (회의록 작성) (현행과 같음)</p>
<p>제1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생략)</p>	<p>제10조 (자료제출 요구 등) (현행과 같음)</p>
<p>제11조 (미합의 사항의 조정 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p>	<p>제11조 (미합의 사항의 조정 요청) (현행과 같음)</p>
<p>제12조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12조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현행과 같음)</p>
<p>제13조 (자문위원) ①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p> <p>③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 (자문위원) (현행과 같음)</p>

현행	변경안
<p><b>제14조 (실무협의회) ①(생략)</b>            ②실무협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담당관(기획감사실장)을 위원으로 구성 하되 상정안건에 따라 담당 국·과장이 배석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양시의 기획 실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제8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④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⑤실무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14조 (실무협의회) ①(현행과 같음)</b>            ②----- 업무 담당과장을 ----- 과장이 -----            ③ ----- 회장시의 업무담당 실·국·과장이 되며 ----- 제8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            ④(현행과 같음)            ⑤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검토 의견서를 -----            -----            ---</p>
<p><b>제15조 (경비부담) ①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b></p>	<p><b>제15조 (경비부담) ①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필요시마다 각 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p>
<p><b>제16조 (회계)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년 첫 번째 회의시 간사가 보고하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p>	<p><b>제16조 (회계) ----- 간사가 관장하고 회장에게 보고하며, -----</b></p>
<p><b>제17조 (규약개정) (생략)</b></p>	<p><b>제17조 (규약개정) (현행과 같음)</b></p>
<p><b>제18조 (보칙)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기타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b></p>	<p><b>제18조 (보칙) 이 규약외의 협의회 운영상 -----</b></p>

# 관계 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

### 第2節 行政協議會

第142條 (行政協議會의 구성) ①地方自治團體는 2個이상의 地方自治團體에 관련된 事務의 일부를 共同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關係 地方自治團體間의 行政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市·道가 그 構成員인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市·郡 또는 自治區가 構成員인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②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協議會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 地方自治團體間의 協議에 따라 規約을 정하여 關係 地方議會의 議決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協議會의 구성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99·8·31]

第143條 (協議會의 組織) ①協議會는 會長과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會長과 委員은 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職員중에서 選任한다.

③會長은 協議會를 代表하며 會議를 召集하고 協議會의 事務를 總括한다.

第144條 (協議會의 規約) 協議會의 規約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協議會의 名稱
2. 協議會를 구성하는 地方自治團體
3. 協議會가 처리하는 事務
4. 協議會의 組織과 會長 및 委員의 選任方法

5. 協議會의 운영 및 事務處理에 필요한 經費의 부담 및 支出方法

6. 기타 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第145條 (協議會의 資料提出要求等) 協議會는 그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 의견의 開陳 기타 필요한 協助를 요구할 수 있다.

第146條 (協議事項의 調整) ①協議會에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부터 調整要請이 있는 때에는 市·道間의 協議事項에 대하여는 行政自治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間의 協議事項에 대하여는 市·道 知事가 이를 調整할 수 있다. 다만, 관계 市·郡 및 自治區가 2個이상의 市·道 에 걸치는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이 이를 調整할 수 있다. [改正 99·8·31]

②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第14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紛爭 調整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調整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施行日 2000·3·1]

第147條 (協議會의 協議 및 事務處理의 效力) ①協議會를 구성한 관계地方自治團體는 協議會가 決定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事務를 처리하여야 한다. [改正 94·3·16]

②第1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調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第140條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4·3·1, 99·8·31]

③協議會가 관계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의 名義로 행한 事務의 처리는 관계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행한 것으로 본다.

第148條 (協議會의 規約變更 및 廢止) 地方自治團體가 協議會의 規約을 變更하거나 協議會를 廢止하고자 할 경우에는 第142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